의안번호	2213026
의 뢰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5. 10. 31.
추계번호	25B520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5억 4,000만원(연평균 21억 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3,400	-	-	-	-	3,400	680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안 제17조)	1,428	1,428	1,428	1,428	1,428	7,140	1,428
계	4,828	1,428	1,428	1,428	1,428	10,540	2,108

주: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 및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계획수립·교육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수 및 교육 실시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허용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거치시설, 충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구역에 대하여도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에는 안전표지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4	안 제10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충전시설과 수리센터의 안전기준, 설치・운영 방법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보험 및 피해구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제2항) 1. 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2. 공공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마련 3.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률 지원 체계 구축	재량규정
7	안 제13조(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제고,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보급을 위하여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친환경 배터리, 충전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연구 3. 자율주행, IoT, GP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개발 4. 보행자 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 장치 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험・실증사업 지원, 데이터 개방 및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음(제3항)	
8	안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10	안 제28조(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1	안 제31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와 안전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함(제1항) 1. 주차시설·충전시설 등 이용시설 현황 2. 대여사업자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등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 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1</td><td>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td><td>○</td><td>유사사례 참고</td></tr>
<tr><td>2</td><td>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td><td>×</td><td>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허용구역에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거치시설, 충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거치시설, 충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1]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자전거 주차장수</th><th colspan="2">관련예산</th></tr>
<tr><th>총계</th><th>'24 신규설치</th><th>'24 유지보수</th><th>'24 신규설치</th></tr>
<tr><td>부산 광역시</td><td>1,012</td><td>14</td><td>39</td><td>38</td></tr>
<tr><td>대구 광역시</td><td>1,362</td><td>13</td><td>8</td><td>22</td></tr>
<tr><td>광주 광역시</td><td>595</td><td>9</td><td>18</td><td>17</td></tr>
<tr><td>세종특별 자치시</td><td>1,216</td><td>33</td><td>2</td><td>20</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td></tr>
</table>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 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3</td><td>안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td><td>×</td><td>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수</th><th colspan="2">관련예산</th></tr>
<tr><th>총계</th><th>'24 신규설치</th><th>'24 유지보수</th><th>'24 신규설치</th></tr>
<tr><td>부산 광역시</td><td>615</td><td>41</td><td>19</td><td>3</td></tr>
<tr><td>대구 광역시</td><td>39</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td></tr>
</table>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 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4</td><td>안 제10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td><td>×</td><td>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취약지역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수단 보유 규모, 사용료 수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3]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초기구축비용</th><th>'24 유지보수예산</th></tr>
<tr><td>서울 특별시</td><td>2,800</td><td>32,450</td></tr>
<tr><td>부산 광역시 기장군</td><td>307</td><td>311</td></tr>
<tr><td>광주 광역시</td><td>895</td><td>178</td></tr>
<tr><td>세종특별 자치시</td><td>1,840</td><td>2,567</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 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5</td><td>안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td><td>×</td><td>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제13조의2[4]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자전거 수리센터</th><th colspan="2">관련예산</th></tr>
<tr><th>총계</th><th>'24 신규설치</th><th>'24 유지보수</th><th>'24 신규설치</th></tr>
<tr><td>부산 광역시</td><td>2</td><td>1</td><td colspan="2">46</td></tr>
<tr><td>대구 광역시</td><td>7</td><td>–</td><td>144</td><td>–</td></tr>
<tr><td>광주 광역시</td><td>10</td><td>2</td><td>174</td><td>51</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td></tr>
<tr><td>6</td><td>안 제12조(보험 및 피해구제)</td><td>×</td><td>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공공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마련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피해구제기금의 규모 및 운영방식, 공공보험·보상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td></tr>
</table>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7	안 제13조(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제고,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보급을 위하여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등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등의 사업 내용 및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8	안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9	안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	유사사례 참고
10	안 제28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알 수 없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11	안 제31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	미대상 - 유사 입법 사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5]을 참고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례 취합 후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어 소액의 인쇄비 외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도 추가재정소요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안 제17조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추계기간 중 첫 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안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안 제5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를 참고하면,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4억원(연평균 6억 8,000만원)으로 추계

- 최근 시·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면 연구용역 단가는 2억원
- 제정안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 17개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비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최근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도	금액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023	190
경상북도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23	200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4-2028) 수립 용역	2023	200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22	195
평균			196

주: 금액은 나라장터 건별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기준임
자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	3,400	-	-	-	-	3,400	680

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수 및 연구용역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안 제17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71억 4,000만원(연평균 14억 2,800만원)으로 추계

- 최근 시·도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사업 단가는 연 8,400만원 수준
- 17개 시·도지사가 매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최근 시·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내용	기간	금액
서울특별시	시민 대상자별 맞춤형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 자전거 교통안전 시민교육(자전거 교통법규, 통행 방법, 안전 수칙, 이용 예절, 기기 관리 방법 주행 실습 등) - 교육인원: 86,676명 - 수강료: 무료	2024.3월~12월	98
대구광역시	상리자전거 교통안전교육 - 6개과정(자전거 정비교육, 초급반, 건강반, 초등학생반, 어린이반, 어르신반) - 수강료: 건강반(2만원), 초급반(1만원) - 교육인원: 1,541명	2024.1월~12월	100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주민 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 - 자전거 안전교육 및 주행 실습 - 교육인원: 1,463명	2024.1월~12월	54
평균			8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1,428	1,428	1,428	1,428	1,428	7,140	1,428

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수, 교육의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제정안 중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